
2024년도 의료시 솔루션 보급 · 확산사업 공모안내서

2024. 2.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 추진절차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2. 신청 및 접수

I

사업 개요

□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기반 헬스케어 정책 및 산업의 급속한 성장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료서비스 질향상 및 AI의료 융합산업의 도약을 위해 통합적인 데이터·AI 융합 지원 모델 마련 및 확산이 필요
-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기반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플랫폼의 제공으로 데이터공유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의료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비식별화/라벨링을 통한 대규모의 고용창출 및 플랫폼 기반의 환자공유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의 발생으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AI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선진화 서비스 제공 필요성

- 데이터·AI융합 헬스케어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AI가 적용된 다양한 솔루션이 적극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필요
-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병원정보시스템, AI진단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선진의료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성 시급
- AI기술을 활용한 생활편의 기능 중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AI체감형 서비스를 보편화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목표

광주지역(인근 5개시 포함)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AI 솔루션을 보급하고, 솔루션 활용 효과를 분석. 지역 의료기관 도입 성과 및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 지역에 활용 확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 국정과제 25번 바이오 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 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7조(사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 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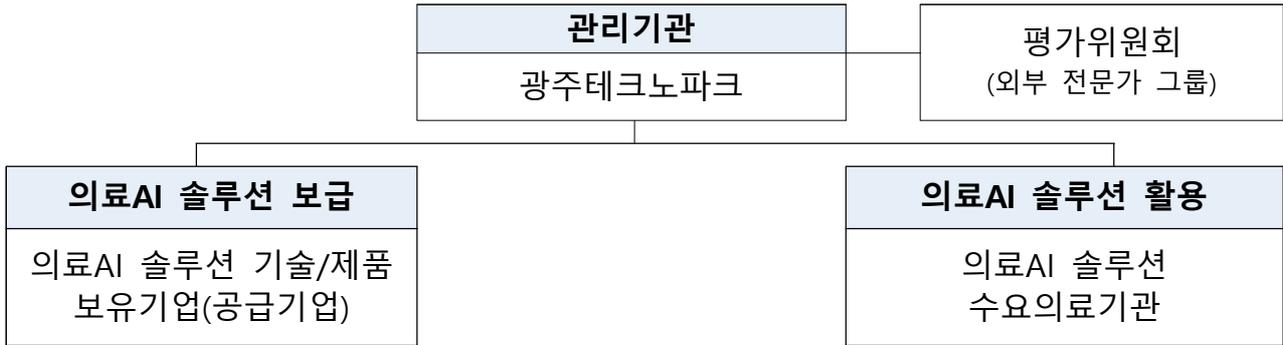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시행령 시행 2021.2.5.)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구 분	주 요 업 무
광주테크노파크 (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과제 수행계획 평가 ○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가 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의료SI 솔루션 기술/제품 보유기업(공급기업) 또는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또는 병원내 직접설치를 통한 의료SI솔루션 공급 ○ 의료SI 솔루션 활용인력 교육지원 ○ 과제진행 및 현황(진도)·결과 보고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의료SI 솔루션 수요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의료기관*에 적용하여 의료SI 솔루션 활용 * 클라우드형, 병원구축(설치)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 ○ 의료SI 솔루션의 사용 효과 분석 및 피드백 등

5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4.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TP(광주TP 홈페이지)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신청서 접수(’24.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 단독(의료AI 솔루션 기술/제품 보유기업) 또는 의료기관(단독) → 광주TP
↓	
선정평가 및 확정 통보(’24. 3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TP * 발표평가(서류 및 발표에 의한 선정평가,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업 또는 지원의료기관 확정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4. 3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TP → 공급기업(의료AI 솔루션 보급기업) 또는 의료기관 * 사업비교부시점은 협약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5월 이내 지급예정
↓	
사업수행 (~’24.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 또는 의료AI 솔루션 활용 의료기관
↓	
결과보고 및 검수 (’24. 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의료AI 솔루션 보급기업) 또는 의료기관 → 광주TP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검수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2024.11.30.까지, 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24. 12월 ~ ’25.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TP → 공급기업(의료AI 솔루션 보급기업) 또는 의료기관 *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수정보완을 포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추진방향

- KFDA 인증을 획득(또는 획득예정)했거나, 의료기관 지원용 AI 솔루션 등을 보유한 기업이나 설치/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의료AI 솔루션을 진료에 활용 하려는 광주 및 인근지역*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활용 확산

*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 병의원이 클라우드에 설치(또는 병원내 설치)된 AI진단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지원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협약기간	○ 협약기간 : 협약일 ~ '24년 12월 31일까지 ※ "협약기간"은 사업비 산정 및 활용이 가능한 기간이며 12월 초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지원규모	○ 의료AI솔루션 5종 이상 (공모를 통해 선정, 총 450백만원 내외) - (클라우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솔루션 연계(우대) - (커넥터형) 직접설치(서버설치) 기반 솔루션 연계 ※ 클라우드형의 경우 공급기업이 자체 클라우드를 통해 의료기관에 선도입하고, 추후 광주 시에서 별도 추진중인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연계활용 플랫폼에 선정된 병의원에 별도 계정을 부여하여 활용지원 예정
지원대상	○ KFDA인증을 획득(또는 획득예정)한 AI진단지원솔루션 또는 의료기관 지원용 AI솔루션 등을 보유한 기업(단독) 또는 광주광역시(및 인근 5개시) 의료기관(단독) ※ 인근 5개시 :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단, 광주광역시 내 1개소 이상의 수요의료기관을 필수로 모집해야 함) ※ 본 과제 참여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 및 조선대학교병원은 병원주도형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기업주도형으로만 솔루션 활용 가능 - (기업주도형) 선정된 공급기업이 지역내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구축 - (병원주도형) 선정된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공급기업을 연계, 솔루션 구축 ※ 기업주도형의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
사업비	○ 클라우드형/병원구축형 구분하여 지원 - (클라우드) 솔루션 1종 당 90백만원 이내 - (커넥터형) 솔루션 1종 당 40백만원 이내 ※ 솔루션 여러종을 도입하는 경우 1종에 대한 금액은 위 예산을 참고하되, 과제별 최대 지원 범위는 솔루션 3종, 1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예시1_클라우드_기업주도) 솔루션 1개당 90백만원 이내. 솔루션 2개인 경우 100백만원 이내 지원 ▶(예시2_커넥터형_기업주도) 선정된 공급기업이 1개 솔루션을 단일 병의원에 설치하는 경우 40백만원 이내, 병의원 3곳에 설치하는 경우 100백만원 이내 지원 ▶(예시3_커넥터형_병원주도) 선정된 의료기관이 1개 솔루션을 설치하는 경우 40백만원 이내, 3개 솔루션을 설치하는 경우 100백만원 이내 지원
주요 과업	○ AI진단지원서비스의 클라우드기반(또는 병원내) 활용환경 구축 및 진료활용지원 ○ 활용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 기타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보고 등 제반사항
 - ※ 광주TP에서 구축중인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클라우드 內 활용환경 구축, 의료정보 연계플랫폼 연동, 운영지원 등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 (지원항목) 의료AI 솔루션당 지원금은 최대 90백만원(커넥터형은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과제별(병원 또는 기업) 최대 지원범위는 솔루션 3종, 1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사업비 편성) 인건비, 솔루션 활용환경 구축비 등 사업비 인정 항목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며, 불인정 항목 집행 시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

< 사업비 지원항목 >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AI 솔루션 활용환경 구축 및 적용 투입인력 인건비 ○ AI 솔루션 테스트 용역비 ○ AI 기술 전문가 자문비 ○ 본 과제와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 본 과제와 관련된 성과 홍보비 ○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관련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 AI 솔루션 납품비(병원주도형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솔루션 활용에 필요 클라우드 임차 ○ AI 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 및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 AI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매·임차 ○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생성·가공 용역비 ○ AI 기술전문가 자문을 제외한 일체 자문비 ○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 세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편성 불가 ○ 사업 기간 외 집행금액

* 별도 구축예정인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에 설치되는 클라우드형의 경우 초기 설치비(클라우드 임차비용 포함)는 광주TP에서 제공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내 KFDA인증을 획득한 의료AI 솔루션 또는 의료기관 지원용 AI 솔루션 등을 보유한 기업 단독 또는 솔루션 활용수요가 있는 의료기관 단독
- (지원규모) 5종 이상
 - *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다수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안규모(갯수)를 3종으로 제한하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모두(일부) 선정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클라우드형은 솔루션 1개당 90백만원 이내 지원, 병원구축형의 경우 1개 솔루션당 지원금 40백만원 이내 지원

2

과제 수행내용

1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 지원 대상

-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한 2, 3등급 AI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지원용 AI 솔루션 보유기업
 - ※ 1개 기업/병원에서 최대 3종의 의료AI 솔루션 제안이 가능함
 - ※ 협약일로부터 1년간 수요의료기관의 의료AI 솔루션을 활용을 지원하며, 과제협약기간 내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관리기관(광주TP) 및 수요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종료일을 지정할 수 있음.(설치일로부터 1년 이내)
 - ※ 클라우드형의 경우 해당 선정 기업의 의료AI 솔루션을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참여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무상(도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모두 제공 가능해야하며, 사업종료일까지(25.12.31) 지속 운영해야함. (플랫폼을 통한 활용정책 제안 必)
 - ※ 의료AI 솔루션 단가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명, 종류, 사용 기간, 수량 등이 적시된 견적서(기업의 자체양식)와 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의 납품(거래)확인서(1건 이상) 제출 요망
 - ※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 또는 AI 솔루션 보유 기업은 ①임상시험 진행 여부, ② 객관적인 의학적 효과 입증서류(논문, 유상판매 내역 등)를 제출할 것

□ 지원 내용

- 선정된 의료AI는 솔루션 활용 의료기관(클라우드 또는 병원내 설치)을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
 - 진료 현장 적용 시 도출되는 임상효과, 비용효과 등의 분석을 위해 '사용효과 및 만족도' 항목을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
 - ※ 필요시 광주TP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와 별개로 사업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
- 의료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은 수요의료기관의 요구사항 및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현장 적용 지원
- 클라우드형의 경우 임상현장에서 의료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클라우드기반 활용 환경,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HIS(EMR), PACS) 등 연동
 - ※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연동방법은 추후 별도제공 예정이며, 기업은 연동방법에 따라 플랫폼 연동을 진행해야 함. 제공된 연동방법은 의료정보연계

플랫폼 성능향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연동방법 수정 시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함

② 참여의료기관 (도입/활용기관)

□ 적용 대상

- 의료AI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지역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실제 진료현장에 활용하여 임상효과 검증 가능한 의료기관에 도입/활용지원 예정
- 광주TP에서 추진중인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HIS(EMR), PACS 등) 구축 병의원을 포함한 지역 내 병의원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병의원 수요(성격, 규모 등)에 맞는 의료 AI 솔루션을 클라우드기반(또는 병원내) 구축 활용 지원

□ 적용 내용

- 의료기관의 수요에 기반하여 의료AI* 솔루션을 적용/활용지원 예정
 - ※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 또는 AI 솔루션 보유 기업은 ①**임상시험 진행 여부**, ②**객관적인 의학적 효과 입증서류**(논문, 유상판매 내역 등)를 제출할 것
 - 플랫폼 참여 의료기관은 의료AI 솔루션의 진료 현장 적용 및 임상효과를 검증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협약기간(~24.12.31) 종료 이후에도 의료AI 솔루션을 진료에 활용예정
 - ※ 협약일로부터 1년간 수요의료기관의 의료AI 솔루션을 활용을 지원하며, 과제협약기간 내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관리기관(광주TP) 및 수요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종료일을 지정할 수 있음.(설치일로부터 1년 이내)
 - ※ 클라우드형의 경우 해당 선정 기업의 의료AI 솔루션을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참여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무상(도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모두 제공 가능해야하며, 사업종료일까지(25.12.31) 지속 운영해야함. (연간 무상제공 건수 및 건당 과금 정책을 제안하여 일부과제에 연장사업비를

지급 또는 제안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

- 의료AI 솔루션 사용 효과 검증
 - (결과보고) 의료AI 솔루션 적용기업은 병의원이 해당 솔루션을 사용한 결과서(사용횟수, 사용시간, 사용효과, 만족도 포함)를 제출
 - (임상 검증) 의료AI의 정확도, 효과성, 효율성 등 분석
 - ※ 임상시험의 평가결과에 대한 성공기준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성공기준을 설정한 사유와 그 근거를 제시
 - (사용성 검증) 의료AI 만족도(임상의, 환자 등), UI/UX 등 AI 사용성 개선 요구사항 평가 등
- 의료AI 솔루션 활용 현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해야 함

3 지원조건 등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물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은 도입 의료기관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지속·활용하여야 하고, 수행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의 소유(단, 기여도와 성과물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과 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도입 의료기관 및 광주광역시/광주테크노파크는 이용권을 소유(K-Health 사업종료일인 2025.12.31.까지)

4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m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신청기업이 지방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등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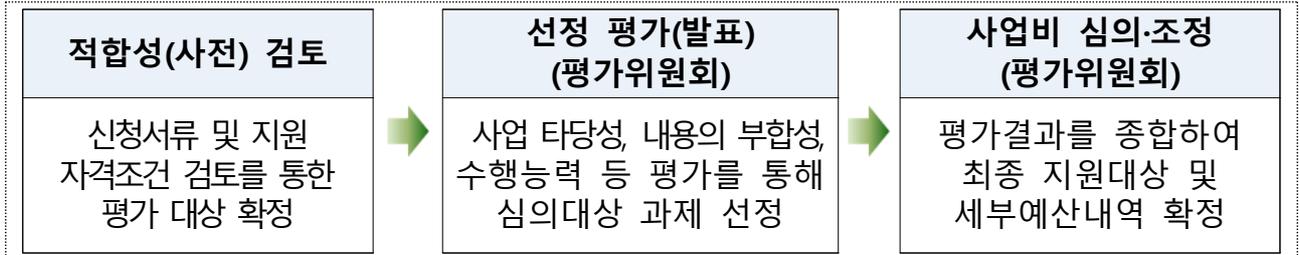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2.21(수)	◦ 공고(광주TP 홈페이지)	광주TP
↓			
접수	'24.3.13(수)	◦ 서류접수(오후 15:00까지)	신청기업, 의료기관
↓			
선정 평가	'24.3.21(목)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3.25(월)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광주TP, 신청기업, 의료기관
↓			
협약체결 및 수행	'24.3.25(월)	◦ 광주TP-신청기업(단독) 협약 또는 광주TP-의료기관 협약 ◦ 사업비 지급(협약이후, 5월이내)	광주TP, 신청기업, 의료기관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일로부터 사업을 수행, 3월 이내 사업비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솔루션 보급 (사용가능한 상태)이 완료되어야 함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대상(기업 또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 참여제한 여부 등(제출기관 제재 여부,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진흥원에 별도 문의 예정
 -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기업(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의료AI 솔루션 공급기업) 또는 의료기관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기업(또는 의료기관)
 -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또는 의료기관)으로 선정.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평가 항목 및 기준(안)>

분류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사업 타당성/정책부합성 (20)	목적 부합성	○ 사업 이해도, 추진 방향, 성과목표 등 적정성 및 추진 계획의 구체성 등	10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의료AI (30)	기업역량 및 참여	○ 기업의 의료AI 개발 경험, 역량 등(수상·특허 실적, 핵심기술 보유 등)	15
	의료AI 우수성	○ 의료AI 솔루션의 우수성(기능성, 호환성, 지속성 등)	15
활용 용이성 (20)	활용환경 구성 및 편의성	○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기관과의 의료AI솔루션 연계전략/방안의 우수성	10
		○ 참여의료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수(건)의 적정성 * 솔루션 종 수 x 수요의료기관 수로 산출하며 결과값의 2배수를 정량점수로 평가 (예시) 솔루션 1종 5개병원 도입 = 5건, 10점	10
사업관리 (30)	품질관리	○ 솔루션 지원에 따른 기술지원, 관리방안 등 품질관리계획의 구체성/우수성/성실성 - 의료AI 보급 의지 및 총 사업기간 중 지원계획의 우수성	20
		○ 협약기간 종료 후 지속 서비스 및 운영(활용지원) 계획	10
총 점			100

※ 사업기간 : ~25.12.31

※ 협약기간 : ~24.12.31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또는 유선 연락)등을 사전에 광주TP 담당자에게 제출(통보)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이 경우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인력이 발표
 -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평가결과는 개별기업(또는 의료기관)에 통보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신규)의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유류비, 관리용역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광주테크노파크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업(기관)은 사업비(지원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업(의료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업(의료기관)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지원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업(또는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관리기관(광주TP)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 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타

- 공급기업(또는 의료기관)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테크노파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급기업(또는 의료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 ‘의료AI 솔루션 보급·확산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유형별 필수 제출 대상		
	제출서류	양식 제공	붙임 순서	클라우드형	기업주도형	병원주도형
1	사업계획서 1부	○	-	○	○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024년 발행본	X	붙임1	○	○	○
3	(최근 3년) 재무제표 (20년~'22년) 각 1부 *’22년 재무제표 없을때(’19년~’21년) *’23년 재무제표의 제출을 협약 이후 요청할 수 있음	X	붙임2	○	○	X
4	수행(주관)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붙임3	○	○	○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X	붙임4	○	○	X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X	붙임5	해당시	해당시	X
7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	붙임6	○	○	○
8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붙임7	○	○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율점검표 각 1부	○	붙임8	○	○	○
10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1부	○	붙임9	○	○	○
11	발표자료 1식[자유양식]	X	붙임10	○	○	○
12	기존 클라우드 적용(또는 On-Premise 설치) 병원 리스트 또는 확인서 1식	X	붙임11	해당시	해당시	X
13	병원의원 도입 확인서 또는 계약서 1식 (공고 이후 체결된 것만 인정)	X	붙임12	X	○	X
14	의료AI 솔루션 견적서 / 증빙자료	X	붙임13	○ (솔루션 수에 따라 각기 제출)	○ (솔루션 수에 따라 각기 제출)	○ (납품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각기 제출)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접수해야함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및 의료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양식 확인)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 의료AI 솔루션 보급·확산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기한) 공고일 ~ 2024년 3월 13일(수) 15:00까지
 - ※ 신청기업이 당일 15:00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다더라도 당일 15:00시까지 광
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00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를 감안하
여 미리 제출 요망
 - ※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및 제출처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
사업운영	광주테크노파크	이은영(전임)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광주테크노파크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